# 단과대학 자율운영 지원을 위한 규정

#### 제1장 총 칙

- 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에 설치된 각 단과대학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이 분권과 자율에 의한 효율적인 대학행정을 구현하고, 제반 운영에 있어서 자율 확대 및 책임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규정의 일반사항과 달리 예외로 적용될 수 있도록,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용어정의) ① "자율운영"이라 함은 각 대학이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의사결정과 실행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  - ② "시범대학"이라 함은 자율운영지원센터에 신청을 통하여 선정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상호협의, 결재 등을 거쳐 최종 시범대학으로서 지정된 대학을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 본 규정은 시범대학 및 대학자율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.

#### 제2장 조 직 및 시범대학 운영

- 제4조 (자율운영지원위원회) ① 대학의 자율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운영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제5조 (자율운영지원센터) 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실행하고 시범대학의 자율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운영지원센터를 둔다.
  - ② 자율운영지원센터의 구성 및 담당업무,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시범대학 운영) 대학의 자율운영을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범대학을 운영한다.

### 제3장 업무영역

- 제7조 (자율운영 업무영역) ① 대학의 자율운영 업무영역은 시범대학의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그 범위를 결정하되,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과 연구 및 행정 등 전 업무영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대학단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다.
  - ② 시범대학의 단계별 자율운영업무 및 그 세부 현황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포함한 별표 1 내지 별표 2와 같으며,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라도 시범대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호협력 등 소정의 과정을 거쳐 자율운영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예 산

- 제8조 (자율운영예산의 범위) 시범대학의 자율운영예산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정규·비정규 교직원의 인건비
  - 2. 매학년도 등록금 수입 예산의 일정비율

- 3. 자체 발전기금 적립금의 일정비율
- 4. 수익사업 등 자체 재원조달 금액
- 5. 등록금 차등 인상분
- 6. 기타 특별 지원 예산

## 제5장 성과측정 및 보상

제9조 (성과측정 및 보상) 대학의 자율운영 추진결과와 업적에 대해서는, 해당주관부서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. 성과측정 및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#### 제6장 지침 및 준용

- 제10조 (지침 및 준용) ①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,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.
  - ② 학장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대학의 전결 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을 대학내 보직 교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제11조 (다른 규정과의 관계) 단과대학 자율운영 지원을 위한 규정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0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율운영 대학 등 확대) 본 규정은 시범대학 운영성과 등을 검증하여 교무위원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교의 전 대학(원) 및 부속기관에 확대 적용한다.